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지방교부세 확대를 통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 황정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756호)

2025. 7.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지방교부세 확대를 통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황정아의원 등 11인
2. 제안연월일 : 2025. 1. 23.
3. 회부연월일 : 2025. 1.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은 원자력시설에 인접하여 방사능재난 등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이들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 및 방재훈련 등의 안전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원자력 안전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재원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라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일부가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에만 교부되고,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예산 지원에서 제외되어 사각지역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방교부세를 내국세 총액의 19.3%로 확대하고, 확대한 0.06%를 원자력안전교부세로 신설하여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6호 및 제9조의5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지방교부세 확대를 통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개정안은 지방교부세의 재원 중 내국세의 비중을 0.06%p 상향(19.24→19.30%)하여 확대한 0.06%p의 재원을 원자력안전교부세로 신설하여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6호 및 제9조의5 신설 등).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지방교부세”란 제4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서 제6조, 제9조, 제9조의3 및 제9조의4에 따라 국가가 재정적 결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1. ----- ----- --제9조의3, 제9조의4 및 제9조의5----- ----- -----.
2. ~ 7. (생략)	2. ~ 7. (현행과 같음)
제3조(교부세의 종류) 지방교부세(이하 “교부세”라 한다)의 종류는 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 <u>부동산교부세</u> 및 <u>소방안전교부세</u> 로 구분한다.	제3조(교부세의 종류) ----- ----- ----- <u>부동산교부세</u> · <u>소방안전교부세</u> 및 <u>원자력안전교부세</u> -----.
제4조(교부세의 재원) ① 교부세의 재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제4조(교부세의 재원) ① ----- -----.
1. 해당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1. ----- -----

현행	개정안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 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 다) 총액의 <u>1만분의 1,924</u>에 해 당하는 금액 2. ~ 6. (생략)¹⁾ ② 교부세의 종류별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교부세: (제1항제1호의 금 액 + <u>제1항제4호의 정산액</u>) × 100분의 97 2. 특별교부세: (제1항제1호의 금 액 + <u>제1항제4호의 정산액</u>) × 100분의 3 3. ~ 5. (생략) <u><신설></u> <u><신설></u>	----- ----- ----- ----- -----<u>1만분의 1,930</u>----- ----- 2. ~ 6. (현행과 같음) ② ----- -----. 1. ----- -----<u>제1항제4호의 정산액</u>----- <u>제6호의 금액</u>----- 2. ----- -----<u>제1항제4호의 정산액</u>----- <u>제6호의 금액</u>----- 3. ~ 5. (현행과 같음) 6. 원자력안전교부세: (해당 연도 의 내국세 총액 + <u>제1항제4호</u> <u>의 정산액</u>) × 1만분의 6 <u>제9조의5(원자력안전교부세의 교부)</u> ① 원자력안전교부세는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 른 원자력시설 중 발전용 원자로 또는 연구용 원자로에 인접함에 따라 같은 항 제9호에 따른 방사 선비상계획구역으로 설정된 지역

현행	개정안
제9조의5(관련 규정의 준용) 부동산 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의 산정자료의 착오 등에 관한 조치, 이의신청, 보고에 관하여는 제8조의2·제13조 및 제15조를, 특별교부세의 보고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군·자치구에 전액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원자력안전 강화 노력,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운영 소요 재원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6(관련 규정의 준용) 부동산 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및 원자력안전교부세-----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부세의 재원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도에 교부하는 교부세부터 적용한다.	

1) 「지방교부세법」

제4조(교부세의 재원) ① 교부세의 재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생략)
2.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총액
3.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
4.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의 차액을 정산한 금액
5.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의 차액을 정산한 금액
6.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제3호의 차액을 정산한 금액

제5조(예산 계상) ③ 다음 각 호의 교부세 차액은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1. 내국세 예산액과 그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세의 차액
2. 종합부동산세 예산액과 그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세의 차액

(1) 방사선비상계획 구역의 의의 및 재원소요 보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원자력시설에서 방사선비상 또는 방사능재난이 발생할 경우 주민보호 등을 위한 비상대책을 집중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으로서, 구체적으로 예방적보호조치구역과 긴급보호조치구역으로 구분됨.²⁾ 예방적보호조치구역은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이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3킬로미터 이상 5킬로미터 이하구역을, 긴급보호조치구역은 반지름 20킬로미터 이상 30킬로미터 이하를 의미함.

이와 같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①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라 함)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의 기초가 되는 지역(이하 “기초지역”이라 함)을 고시하고, ② 원자력사업자가 이 기초지역을 기준으로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도로망·인구분포·지형 등을 고려하여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하며, ③ 최종적으로 원안위가 해당 구역을 승인하는 과정을 거침.³⁾ 2025년 기준으로는 8개 시·도, 28개 시·군·구

3.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예산액과 그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세의 차액

2)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란 원자력시설에서 방사선비상 또는 방사능재난이 발생할 경우 주민 보호 등을 위하여 비상대책을 집중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어 제20조의2에 따라 설정된 구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역을 말한다.

가. **예방적보호조치구역**: 원자력시설에서 방사선비상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주민을 소개(疏開)하는 등 예방적으로 주민보호 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정하는 구역

나.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 원자력시설에서 방사선비상 또는 방사능재난이 발생할 경우 방사능영향평가 또는 환경감시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구호와 대피 등 주민에 대한 긴급보호 조치를 위하여 정하는 구역

3)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의2(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 등) ③ 원자력사업자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하려

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정현황]

(2025년 기준)

구분		소재지(5개)	비소재지(23개)
발전용	고리 · 새울	(부산) 기장군 (울산) 울주군	(부산) 동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금정구, 연제구, 수영구 (울산) 중구, 남구, 북구, 동구 (경남) 양산시
	월성	(경북) 경주시	(울산) 중구, 남구, 북구, 동구 (경북) 포항시
	한빛	(전남) 영광군	(전남) 무안군, 장성군, 함평군 (전북) 고창군, 부안군
	한울	(경북) 울진군	(경북) 봉화군 (강원) 삼척시
연구용	하나로	-	(대전) 유성구

주: **노란색**으로 표시한 지역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원자력시설이 소재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않은 기초지방자치단체임
자료: 행정안전부

2024년에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나 원자력발전시설이 소재하지 않는 지역에도 필요한 재정소요를 보전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지방재정법」에 마련⁴⁾하였는데, 원자력시설이 소재한 광역지방자치

는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지방재정법」

제29조(시·군 조정교부금) ③ 시·도지사는 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각각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할 시·군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금액은 같은 호에 따른 시·군 및 제2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구에 균등 배분한다.

2.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군(해당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시·군은 제외한다)

제29조의2(자치구 조정교부금) ②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각각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할 자치구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이

단체에 속하지 않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의하더라도 재정소요를 보전받을 수 없게 되었음. 이에 국회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부대의견으로 “행정안전부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함에도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하지 않은 시·도에 속하여 제29조제3항제2호 및 제29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정교부금을 받지 못하는 시·군·자치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정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한다.”는 내용을 첨부하였음.

(2) 검토의견

현행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일부가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에만 교부되고,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예산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음. 2025년도에 지정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중에는 경남 영산시, 전북 고창군·부안군, 강원 삼척시, 대전 유성구 등 5개 지역이 이에 해당됨.

경우 제2호에 따른 금액은 같은 호에 따른 자치구 및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군에 균등 배분한다.

2.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자치구(해당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자치구는 제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정안은 지방교부세 재원 중 내국세 비율을 확대하여 그 확대된 재원으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하여 지원하려는 것으로, **현행법상의 입법적 공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개정안이 반영된다면 특정지역에만 지원되는 원자력안전교부세가 신설되는데, 이는 **기존의 지방교부세(보통·특별·부동산·소방안전 교부세)가 전국의 모든 지역에 배분되는 일반적 성격과 다소 상이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원자력안전교부세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내국세의 0.06%를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확대할 예정인데, 이는 중앙정부의 입장에서 수입 중 내국세의 0.06%가 감소되므로, **중앙정부의 재정수요 상황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특정지역만을 지원하는 칸막이 재원 신설은 지방교부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점 및 사각지대(누락지역) 지원을 위해 지방재정법 개정 부대의견에 따라 별도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라는 이유로 신중한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33